

연구비 자체감사 내규

제정 2006. 2. 1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한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연구비 중앙관리 행정체계의 확립과 합리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해서 연구비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감사범위)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비와 관련된 포괄적 감사를 포함한다.

제 3 조 (감사의 종류) 상시자체감사와 특별자체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1. 상시자체감사는 연구비관리부서에 의한 연구비 집행의 예방적·일상적 내부 상시감사
2. 특별자체감사는 제보자의 요구에 의한 감사, 자체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 및 재단감사실의 감사

제 4 조 (감사기관) ① 상시자체감사의 연구비 감사기관은 연구과가 담당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특별자체감사를 위하여 본교 교원 또는 외부 전문인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체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재단 감사실 구성은 법인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며, 특별자체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5 조 (감사방법) ① 상시자체감사의 연구비 감사는 연구책임자가 집행한 각종 카드결제 내역 및 계좌이체요구서 등을 수시 체크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즉시 회수처리하고 그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산학협력단장 및 교무연구처장에게 보고한다. 다만,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.

② 특별자체감사의 연구비 감사는 피감사인 또는 피감사부서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서면감사 외에 필요에 따라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상시 및 특별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집행의 중대한 위반사례에 대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 6 조 (세칙) ① 연구비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내부 접수센터를 둘 수 있으며,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